

분야	회계 · 계약	발생년도	2026년
제목	계약서류 확인 소홀		

구분	세 부 내 용
관련 근거	○ 「국가계약법」 제11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제5조의2(청렴계약)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무) 및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지적 내용	「국가계약법」 제11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하게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담당 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또한, 같은 법 제5조의2(청렴계약)에서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입찰·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을 주거나 받지 아니할 것을 약정하게 하고 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는 조건의 청렴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서는 공공기관은 소속 고위공직자, 해당 계약업무 담당 공직자 등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으며,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무)에서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자는 계약 금액에 따라 정해진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물품구매·용역 등 계약 체결 시 계약서 외에 관계 법령에 따른 사실 확인 및 대가 지급을 위해 아래의 각종 증명서류의 제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계약서 작성 또는 대가 지급 시 확인서류 목록>

증명서류명	관련 법령	확인(제출) 시기
청렴계약서	국가계약법 제5조의2(청렴계약)	계약서 작성 시
수익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수익계약 체결 제한)	계약서 작성 시
정부수입인지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무) 및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계약서 작성 시

그러나, OO지소에서는 공사·물품구매·용역계약 7건에 대해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받지 않은 사실이 있다.

**검토 및
조치할
사항**

공사·구매·용역 등 계약 체결 시 관계 법령에 따른 사실 확인 및 대가지급을 위한 증명서류의 제출 여부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통보)**

분야	회계 · 계약	발생년도	2026년
제목	직책수행경비 지급 소홀		

구분	세 부 내 용
관련 근거	○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지적 내용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5.직무수행경비에 따르면 직무대리(직무대리규정에 의한 법정대리, 지정대리)의 경우 대리하고 있는 해당 직위에 대한 직책수행경비 기준액을 지급할 수 있으며, 2개 기관 이상에 대해 수평적 겸임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각각 그 기관 단위별로 직책수행경비를 지급할 수 있지만, 동 집행지침 III. 주요 질문모음(FAQ)에서는 겸임 시 각각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수평관계에 있어서의 겸임을 의미하므로 하위직이 상위직 업무를 대리하는 경우에는 상위직에 해당하는 직책수행경비만 지급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4급 기관장 업무를 5급 과장이 대리하는 경우에는 4급 기관장에 해당하는 직책수행경비만 지급해야 하고, 5급 과장에 대한 직책수행경비는 지급할 수 없다. 그러나, OO지소에서는 운영지원과장(5급)이 OO전파관리소장(4급) 직무대리로 지정된 기간 중 운영지원과장에게 4급 기관장 및 5급 과장 직책수행경비를 중복하여 지급한 사실이 있다.
검토 및 조치할 사항	중복 지급한 직책수행경비 18,660원을 회수하고, 향후 예산 집행 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에서 정한 비목별 지침에 맞게 집행하기 바랍니다. (시정)

분야	인사·서무	발생년도	2026년
제목	관사 관리 소홀		

구분	세 부 내 용
관련 근거	○ 「중앙전파관리소 관사관리규정」
지적 내용	「중앙전파관리소 관사관리규정」 제1조(목적)에 따르면 중앙전파관리소 관사관리규정은 중앙전파관리소 및 소속 관서 관사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제6조(입주자격 및 우선순위)에서는 관사의 입주자격을 해당 관서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제19조(위임사항)에서는 해당 관서의 장은 중앙전파관리소 관사관리규정의 범위 내에서 관사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한편, 「OO전파관리소 관사관리규정」 제6조(입주자격 및 우선순위) 제1항에서는 관사의 입주자격을 OO전파관리소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제6호에서는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주 연장 또는 공실 방지를 위해 관사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 입주자격 및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실 방지 목적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주자격이 없거나 우선순위가 낮은 자에게 입주 연장을 허용하고자 하는 경우 관사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OO지소에서는 2025.12.31.자 정년퇴직으로 입주자격을 상실한 자에게 공실 방지 및 예산(아파트 관리비 등) 절감을 이유로 입주연장을 허용하면서 관사관리위원회 개최 등 입주 연장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검토 및 조치할 사항	관사 관리업무 수행 시 「중앙전파관리소 관사관리규정」 및 「자체 관사관리규정」을 준수하기 바랍니다. (통보)

분야	복무	발생년도	2026년
제목	임신검진 동행휴가(특별휴가) 관리 소홀		

구분	세 부 내 용
관련 근거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특별휴가) 및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8장
지적 내용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특별휴가) 및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8장(휴가/4. 휴가종류별 실시방법/라. 특별휴가)에 따르면 남성공무원은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임신검진에 동행하기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 동행휴가(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단, 출산 당일은 “임신검진 동행휴가” 잔여일수가 있더라도 사용할 수 없으며, 배우자 출산휴가(20일)로 사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OO지소 청원경찰은 배우자의 출산일에 ‘임신검진 동행휴가’를 사용하였다.
검토 및 조치할 사항	배우자 출산일에 “임신검진 동행휴가”를 사용한 청원경찰 000의 연가저축 1일을 회수(공제)하기 바라며, 특별휴가 사용시 복무규정에 부합하도록 관리하기 바랍니다. (시정)

분야	전파감시	발생년도	2026년
제목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사후 관리 소홀		

구분	세 부 내 용
관련 근거	○ 「전파법」 제92조(과태료) ○ 「전파관리업무에 관한 처리세칙」 제35조(행정처분)
지적 내용	「전파법」 제92조(과태료) 제1호에서는 ‘제25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시설자가 무선국을 폐지하려고 하거나 무선국의 운용을 1개월 이상 휴지하려는 경우 또는 1개월 이상 운용을 휴지한 무선국을 재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과기부장관에게 신고 다만, 「전파관리업무에 관한 처리세칙」 제35조(행정처분)*에서는 “국가기관이나 지자체 등에서 운용하는 소방·산림 등 국가위임사무용 무선국은 행정처분 의뢰를 하지 않고 적발부서의 장이 직접 시정·조치 명령을 할 수 있다 “라고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 「전파관리업무에 관한 처리세칙」 (중앙전파관리소 훈령 제143호, '24.4.17. 개정) 그러나, OO지소에서 2025.9.8. 적발한 OOOO관리공단(OOO OOOO 사무소)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OOOO공단법 제9조)를 수행하는 독립된 법인(OOOO공단법 제2조)으로서 예외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님에도 폐지 미신고 무선국(2국)에 대해 행정처분 의뢰를 하지 않고 시정 명령(전파이용안전과-1075, 2025.9.10., 전파법 위반 무선국 시정 요청)한 사실이 있다.
검토 및 조치할 사항	관련자에게 “주의 “ 처분하고,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시정·조치 등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주의)

분야	전파감시	발생년도	2026년
제목	감시 좌석별 인원 배치 및 실적 관리 미흡		

구분	세 부 내 용
관련 근거	○ 「전파관리 업무에 관한 처리세칙」 제4조(전파감시) 및 제10조(이동 전파감시)
지적 내용	「전파관리 업무에 관한 처리세칙」 제4조 제4항에서는 “지방전파관리소는 평일(주간) 실시간 감시를 위해 고정감시 좌석은 1인 2좌석을 원칙으로 하되, 전파측정시스템의 특성, 직원의 복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감시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OO지소에서는 평일(주간) 실시간 유인감시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인원을 적정하게 배치하여야 하나, 근무 직원의 유연근무 및 출장 등의 사유로 고정전파측정시스템 전체 8좌석(로컬1국, 원격국 7국)을 근무자 1명이 전담하여 감시하는 등 고정감시 좌석별 감시인원을 부적정하게 배치하여 운용하였다. 또한, 「전파관리 업무에 관한 처리세칙」 제10조(이동전파감시) 제1항에서는 고정전파감시에 의한 전파감시가 곤란하거나 전파질서 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동전파감시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세칙 제10조(이동전파감시) 제4항 및 본소(전파관제과) ‘이동감시 활동 추진계획 알림’ 문서에 따르면 이동전파감시 업무 수행 후 7일 이내 이동감시 실적, 차량출동 현황, 무선국 품질관리 등 이동감시 활동내역 및 측정자료를 전파방송통신시스템 및 본소 통합DB에 입력·업로드 하여야 한다. 그러나, OO지소에서는 이동전파감시 업무 수행 후, 무선국 전파품질 측정결과*를 전파방송통신시스템에 총 45회(‘24년 22회, ’25년 23회) 입력하지 않았다. * 점검무선국 정보, 점검시간 및 장소, 주파수, 대역폭, 전계강도, 편이, 편차 등
검토 및 조치할 사항	「전파관리 업무에 관한 처리세칙」에 따라 감시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정감시 좌석별 감시 인원을 적정하게 배치 운용하고, 이동전파감시 수행 및 실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통보)

분야	무선국관리	발생년도	2026년
제목	재난·안전 관련 아날로그 무선국 착오 허가		

구분	세 부 내 용
관련 근거	○ 「전파법」 제19조(허가를 통한 무선국 개설 등) ○ 「재난·안전 관련 무선국 허가·신고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지적 내용	「재난·안전 관련 무선국 허가·신고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5조(아날로그 무선국 변경허가·신고 제한의 예외)에서는 ‘재난 안전 관계기관이 2018년 12월31일 이전에 개설한 아날로그 무선국*의 변경 허가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신청(소방용 무선국)하는 경우에는 접수·처리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아날로그 무선국 : 간이무선국 및 산업·공공용 무선국 중에서 그 전파형식이 F3E(G3E)이거나 F3E(G3E)와 F1E 겸용인 무선국 그러나 OO지소에서는 OO광역시OOOO본부(2005년 개설)에서 신청한 공공(소방)용 아날로그 무선국 변경허가를 예외 규정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한 2025.7.28. 접수·처리한 사실이 있다.
검토 및 조치할 사항	재난·안전 관련 아날로그 무선국 허가 시 관련 규정에 맞게 허가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기 바랍니다. (통보)

분야	무선국관리	발생년도	2026년
제목	등록면허세 납부 대상 미지정		

구분	세 부 내 용
관련 근거	○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 및 [별표1]
지적 내용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1] <제3종> 128호에서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에 「전파법」 제19조 및 제19조의2에 따른 무선국의 개설 허가 및 신고를 명시하고 있다. 다만, 준공검사* 없이 운용할 수 있는 무선국**과 아마추어 무선국은 제외하고 있다. * 무선국 개설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가 받는 검사(전파법 제24조제1항) ** 30와트 미만의 무선설비를 시설하는 어선의 선박국 그러나, OO지소에서는 등록면허세 납부 대상인 30와트 이상의 무선설비로 변경허가 신청한 어선의 선박국(8국)을 등록면허세 납부 대상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검토 및 조치할 사항	무선국 등록면허세 납부 대상으로 미지정한, 30와트 이상의 무선설비를 시설한 어선의 선박국(8국)에 대해 등록면허세 납부 대상으로 지정하시기 바라며, 추후 변경허가 시 등록면허세 부과 대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분야	무선국관리	발생년도	2026년
제목	아마추어국 주파수 오지정 및 외국인 허가 부적정		

구분	세 부 내 용
관련 근거	○ 「전파법 시행령」 제115조(자격종목 및 종사범위)
지적 내용	「전파법」 시행령」 제115조(자격종목 및 종사범위) 및 [별표17]에서는 무선종사자 자격에 따른 무선국 주파수 운영 범위를 지정하고 있으며, 무선국 개설허가 및 재허가 시에는 무선종사자 자격에 따른 주파수 지정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여 허가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아마추어국 허가처리 지침」 및 「아마추어국 단기허가 지침」에 따르면 외국인 아마추어국을 허가시에는 아마추어국 상호운용협정을 맺은 국가의 국민이 아닐 경우 단기허가를 하여야 하며, 단기 허가는 3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지정하고 1회(3개월)에 한하여 재허가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OO지소에서는 무선국 재허가 시 아마추어 무선기사가 자격 요건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주파수를 지정한 사실이 있으며, 아마추어국 상호운용 협정을 맺지 않은 캐나다 국적의 외국인 아마추어국 허가시 3개월 범위 내에서 필요 기간을 지정하여 허가를 하여야 함에도 ‘25년 ~ ‘29년 기간으로 허가하였다.
검토 및 조치할 사항	아마추어국 허가 시 자격 종목에 맞는 주파수를 지정하고, 외국인 아마추어국 허가 시 규정에 맞는 허가 기간을 지정하기 바랍니다. (통보)

분야	유지보수	발생년도	2026년
제목	유지보수 업무 관리 소홀		

구분	세 부 내 용
관련 근거	○ 「전파관리시설 유지보수업무 처리지침」 제4조(전파관리시설 예방 점검) 및 제14조(긴급복구반 및 긴급복구자재 관리)
지적 내용	① 긴급복구용 자재 및 공구 점검 소홀 「유지보수업무 지침」 제14조(긴급복구반 및 긴급복구자재 관리)에 따라 유지보수 담당부서에서 반기별로 점검을 실시하고, 장기 보관으로 인한 기능 및 성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동등 이상의 장비로 순환 대체하여야 한다. 그러나 OO지소는 긴급복구용 자재 및 공구에 대한 점검(반기 1회)을 실시하면서, 일부 긴급복구 자재의 교체 주기(사용기한)가 지났음에도 순환 대체를 하지 않았다. ② 전파관리시설 예방점검 소홀 「유지보수업무 지침」 제4조(전파관리시설 예방점검)에 따라 운용부서는 전파감시·조사단속·무선국검사·전자파강도측정·전파환경조사 등 업무용 장비 및 예비시설로 분류한 장비에 대해 전원, 버튼 등 기본 작동 등을 월 1회 이상 점검 및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OO지소는 자체 예방점검(월간점검)을 실시하면서, 교정기관에서 교정 불량으로 확인된 장비의 점검 결과를 ‘양호’로 관리하였다.
검토 및 조치할 사항	「유지보수업무 지침」에 맞게 긴급복구 자재를 주기적으로 순환 대체하고, 전파관리시설 예방점검 시 규정을 준수하여 점검 및 기록·관리하기 바랍니다. (통보)

분야	전기통신	발생년도	2026년
제목	전화번호 거짓표시 금지 검사업무 결과 통보 소홀		

구분	세 부 내 용
관련 근거	○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제93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전화번호 거짓표시 금지 관련 검사업무처리 매뉴얼」
지적 내용	「전화번호 거짓표시 금지 관련 검사업무처리 매뉴얼」에 따르면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위반내역이 명시된 확인서를 사업자에게 전달 후,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문서에 대해 별도 고지하여야 한다. 또한, 「행정조사기본법」 제24조(조사결과의 통지)에서는 행정조사의 결과를 확정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OO지소는 조사 결과를 확정(내부결재) 후, 법정 통지기한 (7일 이내)을 경과하여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였다.
검토 및 조치할 사항	향후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기한 내(결과 확정 후 7일 이내)에 조사 결과를 통지하기 바랍니다. (통보)